

조선시대 생활문화에서 본 경제극복 방안

조희선(성균관대 교수)

I. 머릿말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가정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는 힘이며, 삶의 질을 나누고 향상시키는 생활공동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 위기는 한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과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상생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경제가 원활하기 위해선 실물경제를 악화시키는 지나친 소비절약만이 美德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왜 절약해야 하는지 어떻게 절약해야 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개인의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데 삶의 목표를 두고서 물질 중심의 생활방식에 의존해왔다. 이에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어음이라면 지출을 줄이게 하는 것은 현찰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중산층의 살림을 펴주기 위해 중산층의 지출을 줄이는 쪽을 택했다고 한다.

흔히 전통사회와 근대를 이질적인 것으로 대비하여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도 전통은 지속성을 갖고 재구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같은 인식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은 과거로부터 전래된 것이면서도 그 가운데 현재의 문화적 창조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므로 부정적 의미의 인습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미화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며 과거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그 비판적 계승을 통해 재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건전한 생활철학을 기초로 한 의식의 전환으로 선조들은 생활문화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발견하여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조선조 유교문화권에서는 일상과 의례의 생활문화 측면에서 어떻게 경제적 대응을 하였는지 고찰해 보고자 생활문화를 총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제극복 실현을 위한 물질소비 규범과 대응책, 이를 뒷받침 하는 정신세계를 알고자 古典의 가르침, 조선조의 규방 및 일반 규범서, 실생활에서 발견되는 경제극복의 실제와 규제를 알고자 조선왕조실록과 경국대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생활문화의 시대적 배경

조선왕조는 정치적으로는 유교의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왕도정치를 구현하려 하였다. 왕도정치는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로서 사회질서를 중시하였으나, 왜란과 호란, 사화 등의 국내외적 전쟁으로 인구가 격감되고 농촌은 크게 황폐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가재정의 궁핍과 식량 부족의 문제 가 오랜 기간 발생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양천의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여 양반중심의 지배질서를 가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지배 와 피지배 관계를 기초로 하여 지배층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이 이루어졌다.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은 역사적으로 볼 때 巫敎의 논리로부터 출발하여 道敎, 佛敎의 논리를 거쳐 儒敎 특히 性理學의 논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유교만이 전통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선조 수백 년 동안 유교가 지배규범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적 가치관에서 유교의 비중은 심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윤리와 의례에 관한 책들도 편찬되었다. 삼강행실도와 효행록의 출간을 시작으로 국가의 의례를 제정, 정비하고자 국조오례의 등을 편찬하였으며, 통치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하여 법제의 정비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즉 태조 아래로 법제운영을 위하여 법전을 편찬하였는데,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편찬하였고, 조례를 모아 경제육전을 만들었다. 성종대에 이르러 이전, 형전, 호전, 예전, 병전,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된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여기에 소학교육을 통하여 유교적 가치관을 생활화하였으며, 향촌 자치를 위하여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 추진하여 유교식 의례를 장려하였다.

1. 유교 예제의 확립과 ‘분수 지키기’를 통한 경제극복

조선 초기에 있어서의 예제의 시행은 예에 대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실시되기 보다는 고려시대의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유교사회로의 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몽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은 주자학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심화되고 유교적 예제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성숙되었으며, 퇴계와 율곡에 이르러 성리학적인 사상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예학에 대한 의식적 탐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예관념은 법제면의 효과와 가례중심의 주자학적인 인식의 성장과 더불어 양반층의 자기중심적 예관념이 변화되어 유교적 예제를 의식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소극적 예관념에서 적극화되어 실천적으로 진보 발달되었다.

중종조 홍문관에서는 다스림의 근본은 內治에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에도 上下의 분수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漢明制와 唐 태종의 예를 들어 義로 절제하는 것이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혼수의 사치, 집의 間架의 확장 등을 다투어 승상하고 모방하는 것은 위망의禍를 자초하는 것이라 아뢰었다.

예로 안동 양반들은 “양반의 일은 더도 덜도 말고, 맞치 맞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반의 모든 행동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알맞아야 한다는 말이다. 평소 청빈과 검약을 중히 여긴 퇴계선생은 유밀과는 기름이 많이 들어 낭비가 심하다 하여 제사에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의 관행 탓으로 지금도 퇴계 종택에서는 제사상에 유밀과를 올리지 않는다. 나물도 여러 그릇에 담지 않고 한 그릇에 모아 담아낸다. 제사를 지낼 때 있어서 기본은 지키되 지나침은 삼가라는 의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편에 맞게 제사를 차린다.”에 대하여 안동 양반들에 따르면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지 않고

대소가의 형편을 두루 살피면서 지낸다는 뜻이 것들에 있다는 의미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제수상차림에 있어 돌아가신 조상들의 생전 식성에 따라 맞추다보니 자연히 제사 음식이 약간씩 달라지고, 후손들은 이를 통해 가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III. 생활문화에 반영된 경제극복

조선시대 일상생활과 의례문화의 규범과 법제는 예학을 기초로 형성되었다. 이에 경국대전등 기타의 자료를 보충하여 그 시대 일생생활과 의례의 실제모습과 이를 근거로 한 규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일상생활을 통해 본 경제극복

1) 절용과 체통

内訓을 비롯한 조선전기의 문헌들은 양반가에서 주로 중국의 古典을 발췌하여 가정교훈서로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유교적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가족제도, 생활의례, 남녀행동 등의 가정생활 문화를 제시하고 규제하였다. 물질소비생활과 관련하여 조선전기 실학이 출현하기 이전까지는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검소하고 부지런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근검절약은 조선조 전반에 걸쳐 富를 이룰 수 있는 생활 속의 기초덕목으로 강조되었다. 그 후 戒女書를 매개로 후기의 규범서들은 성리학의 봉건적 이념에서 탈피하여 실생활에서의 민생문제 즉 기술, 생산노동에 대해 공리성을 띤 실학정신에 의해 구체적이고도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했다.

이에 尤庵은 戒女書에서 治家의 기본은 절용으로 天子도 庶人도 절약만이 다스림의 근본임을 강조하였으며, 「山林經濟」에서는 재물을 모으려면 재물이 없어지는 미려부터 막아야 하며,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하나에서 열이 되게 하고, 열에서百이 되게 하여 비록 千이고 萬까지라도 그 방법 밖에 없으므로 아무리 작은 한 푼의 돈, 한 톤의 쌀이라도 쓸데없는 곳에다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된다하여 재물을 모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절용이었다. 그러나 체통을 잊는 인색과 절약을 혼동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衣食住 생활에서도 먹는 일은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일이다. 한국인은 유난히 먹는 것을 중시하지만 조선시대에는 하루 두끼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식사를 '朝夕'이라고 하였다. 18세기 후반 이덕무는 「청장관전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5홉(지금의 1.5홉)을 먹으니 하루에 한 되를 먹었다고 한다.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간식 정도로써 오희문의 「쇄미록」에서도 간단히 먹을 경우를 점심, 푸짐하게 먹을 때는 '낫밥'이라 구분하고 있다. 궁중에서도 朝夕에는 '수라'를 올리고, 낮에는 간단하게 국수나 다과로 '낫것'을 차렸다. 끼니 수는 계절에 따라 달라 19세기 중엽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정산고」에 의하면 대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은 하루 세끼를 먹고, 9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5개월 동안 하루 두 끼를 먹었다고 한다. 살림 형편에 따라서도 달라 빈민들은 하루 두 끼, 부유한 사람들은 세 끼, 또는 그 이상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도 사대부가에서의 음식사치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었다. 음식사치의 폐단은 중종조에 특히 심하여 손님접대에는 언제나 20여 가지를 겹하며, 그렇지 않으면 박대하는 것으로 경쟁하였다. 우리나라

의 습속은 음식을 매우 풍성하게 하여 허비와 사치로 이어지므로 많아도 너댓 그릇을 넘지 않게 하며, 감사 병사 수사부터 음식을 검소하게 먹을 것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남의 절박을 틈타서 싸게 산 물건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남에게 각박하게 하여 이롭자고 하는 생각을 품위 없는 것이라 하여 매매행위에서도 부녀의 체통을 강조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治家에는 절용이 기본으로 사치하지 말며, 적거나 많거나 소중히 여기며, 天子도 匹夫도 모두 절약하여 일하는 근면한 자세가 필요함을 당부하고 있다. 즉 단순한 재물의 절용에서 인색함은 인심을 잃는 것으로 절용과 인색함은 차이가 있음도 지적하고, 재물의 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2) 비축

성종은 근검과 절용에 대해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재물을 생산하는 것은 根本을 힘쓰는데 있고, 재물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節用에 있다. 절용하고자 하면 먼저 儉約해야 한다. 사치하면 많이 쓰고 그러면 재물이 바닥이 난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척박한 조건을 들어 화려하고 사치함을 금하였으며, 급하지 않는 공사는 중단하고, 무익한 비용은 없애어 궁중에서 궁 밖까지 검약과 절약을 승상하여 소모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가을 겨울에는 죽을 먹으면서 농사지을 달에 쓸 것을 저축하는 비축의 준비를 일렀다. 즉 비축생활을 위하여 검소와 절약 뿐 아니라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하였다.”

3) 사치의 금지

태조 4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손님집대에 사치하여 재물을 허비하므로 현사에서는 금주령을 내리자는 상소문을 올렸다. 즉 술은 궐내의 법주, 과자는 진기한 것, 器血은 상에 가득차야 손님을 청하는 풍속이 상하구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조는 즉위 교서에서 궁중에서부터 검약을 승상하여 宴享과 齊會에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쓰는 풍속이 있으므로 금은, 주옥, 진채사, 화단자 등은 일체 금하도록 반포하였다.

금지에는 상당부분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즉, 문단금지정책은 문단을 사용하는 주 계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 이를 일종의 정치적 압력으로 이용하려는 지배층의 목적을 담고 있었으며, 문단의 금지에는 기본적으로 고가의 사치품 사용을 제한한다는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

조선은 초기부터 사치와 고급물품들은 엄격히 규제되었다. 중국비단을 포함해 고급물자 사용은 공식적으로 당상관 이상에 제한되어 있었다. 여기에 기녀(妓女), 의녀(醫女)가 규정에서 예외에 해당하였고, 사족부녀를 비롯한 부녀자의 의복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규정이 적용되었다.

경국대전의 기록에 따르면 의생활과 식생활, 집의 규모에서도 사치함을 억제하기 위해 지위의 高下에 따라 제한을 두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장형에 처했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제정된 이후 성종과 공혜왕후의 검박함이 이르던 시기에도 사치는 계속되었다. 연산군 이후 중종조에 이르러서는 나라경제가 불안정함으로 사치가 궁실을 비롯하여 土庶人까지 행해져 중종은 검약할 것을 강조했지만, 萬錢을 허비해서라도 술과 음식, 八珍味의 고기반찬을 많이 만들어 파시하는 일, 公卿에서 土庶까지 집 넓히기를 힘써 土木에 채색을 칠하고 비단옷 입기를 경쟁하며, 교자를 타고 첨의 집을 출입하고, 상인의 아내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貂皮를 입고… 등 온 백성이 사치를 승상하여 나라가 풍족할 수 없으므로 중종은 “임금의 검소와 절용의 뜻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부녀자와 어린이에게 모두 알게 하라.”고 했다. 이는 제군, 大家 및 궐내를 모방한데 원인이 있으므로 근본을 바로잡아 사치의 폐풍을 없애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강관 박우 등은 왕실의 모범으로 백성까지 이르기를 건의하였다. 그 후에도 사치풍속의 폐습을 없애기 위하여 궁궐경비 절감을 시작으로 노력하였다.

사치품의 소비는 의복, 머리모양, 보석 등의 분야에서 좀 더 고급스럽고, 화려한 형식을 나타내며 유행을 이루어갔다. 여성들의 소비생활은 사대부들 내부에서 비판되었고, 정부에 의해 금지조치로 제지되었으나, 숙종대는 이미 의관(醫官), 역관(譯官), 상인(商人) 등의 사치는 의복, 침장, 혼례, 납채, 금은 주택 등 고급 사치품 전반에 나타나고 있었다.

사치는 계급을 넘어 조선사회의 전반적 문제로 널리 퍼지고 있었다. 영조 21년 장령 金履萬의 상소에 따르면, 사치는 특정 부류의 문제가 아니라 사대부, 시정배, 시골, 산골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사회풍속으로 이 때문에 조선 전체의 재화가 낭비되고 있으며, 따라서 백성들이 곤궁해져 간다고 지적하였다.

사치의 풍조가 확대되면서 계층을 막론하고 고급물자를 소비하는 추세가 엿보이는데, 하류 계층의 이러한 욕구는 유행의 흐름으로 확대되어갔다.

中宗代에는 사라능단 등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금지하는 논의가 급증했다. 이때 禁制의 규정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前朝인 연산군대에 유난히 사치물품 수입이 급증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고위관료들의 행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조는 사치풍조에 대해 관심이 깊고 사치배격 의지도 강하였다. 영조는 스스로 검소를 실천하였다. 목면관복을 입도록 교시하였다. 따라서 사치배격에 대한 조정분위기 등으로 인해 관복으로 목면 소재를 입어야 했음을 엿볼 수 있다.

中宗代에는 사라능단 등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금지하는 논의가 급증했다. 이때 禁制의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前朝인 연산군대부터 사치물품 수입이 급증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던 고위관료들의 행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였고, 문단 수입금지는 국내의 은화유출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었던 위기의식에서 나온 조선정부의 정책으로 은화의 유통 행위를 정부에서 직접 통제하려는 추진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영조는 사치배격 의지도 강하여 궐내에서 수입비단 사용을 제한하였다. 스스로 검소를 실천하고자 목면관복을 입도록 교시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사치가 사회문제로 심화되자 각종 복식금지령과 중국제 비단 수입금지령을 내렸으며, 법적 금지조치 외에도 왕실이 솔선수범하여 사치풍조를 막으려고 임금의 평상복을 모시나 명주 등의 옷감으로 하고 여러 차례 빨고 기위 입는 솔선수범의 정신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후 효종 순조 철종에 이르러서는 대왕대비, 왕후에 대한 논의에서 그들의 근검의 德을 주로 친양하였으며, 사치의 폐해에 대한 기록의 양이 절대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이는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과 연결하여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치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나라를 쇄망으로 이끄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逆으로 나라의 쇄망은 사치를 행할 수 없게 하는 결과로써 결국 사치금지의 문제는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와 연결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선사회는 건국 초부터 사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사치배제를 위한 신하의 상소와

임금의 간절한 노력과 규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치 풍조의 확대는 경제력의 성장과 관련된다.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상품유통의 발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도시의 발달 등은 이 시기 사치소비를 증가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조선후기 사치소비의 확대는 ‘물자낭비’ ‘사치풍조’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물자의 고급화, 형식의 화려함으로의 발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1) 은화유출 방지

당시 사치물품의 수입이 사회 문제화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은화보유와 관련한 경제문제에 있었다. 중국수입물품을 교역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銀貨이므로 중국수입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직물중심의 사치품 수입은 한정된 은화의 유출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은화유출의 방지목적에 따라 사치품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다.

(2) 금주

태조 이성계는 임금이 된 지 2년째에 첫 금주령을 내렸다. 태조는 궁중의 잔치는 물론, 신하들과 정례로 술 마시는 일을 일단 중지하게 했다.

1755년(영조 31) 9월에 영조는 전통적 관례에 따라 금주를 철저하게 단속했다. 가을인데도 흉년이 들어 절대량의 쌀이 모자랐던 것이다. 영조는 전국에 영을 내려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고, 만약 술을 팔거나 사 마시는 자가 적발되면 귀양을 보내는 등 엄한 형벌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금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국가 행사인 종묘에서도 술을 쓰지 않고 단술을 제주(祭酒)로 대신 쓰게 하였고, 아침 저녁의 상식(上食)에도 낮에 올리는 다례(茶禮)의 예에 따라 다(茶)로 단술을 대신하게 하였으며, 사대부집의 제사에는 청수(清水)를 쓰게 하였고, 이를 어기면 그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금주령으로 술을 제조하거나 마시는 것을 금지한 때도 있었으나, 제례나 연회를 행할 때 술은 필수적으로 이용되었다. 금주령은 대부분 재해를 당했을 때, 곡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기한을 정해 시행되었다.

금주령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조선 초 세종의 교시에도 있었으며, 중종 때에도 금주령을 내렸으나 술을 금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특히 국가는 큰 기근이 들면 금주령을 내렸다.

(3) 부채 사치 금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부채는 벼슬아치들의 필수품으로 예조에서는 1·2품에게는 붉은 비단으로 꾸민 원선(圓扇), 3·4품에게는 남빛 모시로 꾸민 원선, 5품에게는 새털로 장식한 학령선(鶴翎扇), 그 이하에는 아무 장식이 없는 접선(摺扇)을 사용하게 건의했고 태종은 이보다 더 간소한 부채를 사용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부채는 신분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부채사치는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부채의 유행으로 말미암아 대나무가 마구 베어지고 죽전이라는 세금 등 공물의 폐단이 생기기도 했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사치스런 부채를 억제하여 그 폐단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 가체 치장 금지

가체란 부녀자들이 머리위에 동여매서 머리 모양을 내는 것이다. 머리숱이 적거나 설령 많다하더라도 더욱 커 보이게 하기위해 가발을 얹는 것이다. 18세기경에는 더욱 유행을 하여 궁중은 물론이고 여염집

의 여자와 기생들까지 다투어 흉내를 냈고, 심지어 여종들, 궁중을 출입하는 의녀들까지 이 머리 장식을 했다고 한다. 가체에는 온갖 장식을 하여 비단은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고 은과 주옥은 일본에서 들여왔는데 모두 밀무역품이므로 영조는 금주령과 함께 국가의 영으로 이를 금했다. 영조는 금령을 내리면서 부녀자들에게 가체 대신 족두리를 올리게 했다. 뒤를 이어 정조도 대를 이어 사치근절을 위해 가체를 팔고 사는 행위를 일절 금하고 여염의 여자들은 머리를 동여매고 비녀를 꽂아 머리 모양을 간소하게 하였으며, 사치스런 의복도 제한하였다. 이렇게 사치근절은 검소함에서 출발하였다.

2. 의례문화를 통해 본 경제극복

태조는 그 卽立敎書에서 冠婚喪祭는 나라의 큰 법이며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올바르게 한다고 하여 四禮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러나 喪禮의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갈등을 노출했다. 정통 성리학자들의 주장은 고래로 내려온 전통적인 禮俗은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예리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하여, 엄격히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성현 박순, 양성지 등은 이는 민간의 아름다운 풍속으로 용인하자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를 책임지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다.

1) 혼례 사치 금지

혼례사치에 대한 논의는 조선의 건국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태종조 大小혼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출이 많지도 않은 촉밀을 사용하는 사치를 큰 폐단으로 여겨 금할 것을 건의하였다. 세종조에는 특히 임금과 중궁이 검약을 승상하므로 왕실을 중심으로 실천적 모범을 보였다. 예로써 왕세자의 嘉禮에서 酎禮와 見舅姑禮의 상차람, 炬火(촉밀)를 제한하였다.

세종은 혼례예단과 관련하여 간소하게 하도록 戒하였는데 신부집에서의 이불, 요준비에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구하기 어려운 능금단자를, 복식으로는 사라능단을 금하며, 집의 재산여부에 따라 본토에서 생산되는 명주, 면모, 모시를 쓰게 했다.

세종은 숙신옹주의 가례에서 10년 후 왕자의 가례 때에도 신부집에서 사치스러운 婚禮品(진귀한 주옥, 비단의 복, 안마, 갓 등)을 보내는 풍속을 없애도록 하는 등 검약을 실천하는데에 앞장섰다.

성종조에는 혼례와 관련한 사치가 이어지므로 예조에서 사치금지 조목을 마련하였는데 <續六典>에 의하면 紗羅·綾緞을 쓰지 않도록 했다.

또한 李瀨의 「星湖僕說」, <人事門>에서는 “婚姻과 喪事에는 집의 형편이 있고 없음에 따르며..”라 하는 등 혼수사치의 폐해에 대해 위로는 조상의 업적을 팔고 제사도 모시지 못하는 不孝를, 아래로도 결코 딸을 시집보낼 때 반드시 饌飯을 극히 풍성하고 사치스럽게 차려 보내 시집사람들을 먹이고 이를 이름하여 長盤이라 하고, 일가친척과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여 빛을 내며, 시가의 제사 지내는 날에도 반드시 큰 그릇에 떡을 괴고 큰 병에 술을 채워 祭床아래 벌여 놓고 이를하여 加工이라 하는데 이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치로 생각한다. 무릇 이 두 가지의 일은 모두 경박하고 사치스러운 풍습이니 신랑집에서는 마땅히 이를 엄히 금지하도록 하였다.

2) 喪·祭禮의 현실화

예학은 성리학의 발달과 함께 왕실위주의 국가질서론과 주자가례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 인하여

상장제례의 의식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되었으나 지나치게 형식 중심이다 보니 때로 사치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신분질서를 지키려는 뜻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사치를 막자는 이유로 신분에 따라 일정한 차등을 두었다.

喪과 祭禮의 검약에 대한 기록은 극소수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부모에 대한 孝는 가정생활의 중심원리 이므로 孝에 입각한 喪·祭禮는 가정의례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었다. 즉 혼례의 중요성이 양적 요소였다면 인간의 통과의례에서 喪·祭禮는 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태종조에 예조에서 이르기를 “공자왈 상사는 집안형편에 맞게 하라.” “맹자曰 볍제에 맞지않으면 기쁨이 될 수 없다.”를 들어 喪과 祭禮에 있어 大夫와 庶人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사치를 극진히 하여 남 보기 좋게 하고, 재물이 없는 자는 세속을 따라 꾸기까지 하므로 이는 성현의 교훈이 아님을 지적하는 점에서 분수와 재물의 한계에 기준을 분명히 한 점은 오늘날의 의례생활에 대해 교훈이 되는 좋은 예이다.

성종조에 예조에서 올린 사치의 배제에는 “향촌의 富民은 喪·祭를 성대하게 辦備하여 유밀과를 큰 쟁반에 담는 데에 이르고, 葬事가 나가는 밤에는 酒饌을 후하게 베풀어 빈객을 모아 풍악을 울리며 주검을 즐겁게 하는데 만약 기일을 좋아 辨備하여 베풀 수가 없으면 이로 인하여 여러 해를 장사지내지 못하니 風教를 傷하고 교화를 폐하는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도를 어기는 자는 통렬히 治罪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민간에서도 장례의 용구에 사치하여 家產을 허비하고 제도를 넘어서는 자가 있으므로 따라서 葯具도 살림의 형편에 따라 알맞게 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성종은 喪祭禮와 관련하여 잘못된 민간습속을 바로 잡도록 하였다. 즉 우리의 민속에 어버이의 장사를 지낼 때 酒食을 많이 마련하여 동네 남녀가 보여 술 마시는 雜戲로써 기강이 무너지는 폐해를 혁파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수도 풍성하고 사치하여 제사비용으로 과산하는 지경이며, 가난한 자는 어버이 유해를 드러내 놓고, 때가 지나도록 장례도 못 지내는 폐단을 지적하며, 백성 모두가 이 뜻을 깨우치도록 하였다.

인조 3년 제사시의 造花문제에 대한 현부의 상소문을 보면, 宮家에서 진향을 할 때 綵花를 만들어 金絲로 엮어 달며, 饌品도 번다한 한심스런 일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깨끗하고 검약하도록 하며, 이를 어긴 者는 그 家長을 治罪하고, 祭享에 花을 故用하는 것도 본래 經史와 五禮儀에도 없으므로 제사에 조화를 쓰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증보(增補) 「文獻備考」의 <五禮儀>에서 제시하는 사대부와 서인의 제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품 이상은 과일이 다섯 그릇, 소채(蔬菜)가 세 그릇, 포(脯)·젓·면(麵)·병(餅)·어(魚)·육(肉)·적(炙)·간(肝)·반(飯)·갱(羹)이 각각 한 그릇씩이고, 술은 세 번 올린다.

6품 이상은 과일이 두 그릇, 포·젓·소채·면·병·어·육·적·간·반·갱이 각각 한 그릇씩이고, 술은 세 번 올린다.

9품 이상은 소채·어·육·적·간·반·갱이 각각 한 그릇씩이고, 포·젓 중에서 한 그릇이며, 술은 세 번 올린다.

서인(庶人)은 9품에 비하되 어·육은 없다

기일(忌日)에는 소찬(素饌: 고기나 생선이 섞이지 않은 음식)을 쓰고, 속절(俗節)에는 그 때 먹는 친품(饌品)으로 적당한데 따라 준비한다.

한편, 「經國大典」의 禮典에서는 제사의 범위에 대해 “6품 이상의 문관이나 무관은 3대까지 제사지

내고, 7품 이하는 2대까지 제사지내며, 일반사람(庶人)은 단지 부모에게만 제사지낸다. 맏집의 자손(宗子)이 벼슬이 낮고 지차 집의 자손(支子)이 벼슬이 높으면 지차 집을 따라 代數를 따진다”고 하여 품계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전통가정에서의 제사는 四代奉祀로서 四代 조상까지 제사를 모셔야한다고 알고 있는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통사회에서는 의례에서도 형식만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하여 분수에 맞게 제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합리적 실용성에 근거하여 ‘분수 지키기’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형식만을 중시한 나머지 분수를 넘게 되면 자연히 祭需 장면에 격정하게 되고, 구차하게 조상을 이유로 남에게 얻게 되므로 이는 조상에 대한 禮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가정의례에 대한 조선왕조의 의지는 절용을 바탕으로 사치를 배제할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의 실천 규제에 대한 기록은 세종과 성종조에서 중점적으로 많았다. 조선의 聖君으로 꼽히는 두 임금은 관습적 풍속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규제를 통해 절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조선조 왕실에 대한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세종과 소현왕후, 성종과 공혜왕후, 효종조 인선왕후, 숙종조 왕대비, 순조조 순원왕후, 철종 등에서 절용을 칭송하고 있었다.

3) 윤번제를 통한 壓·祭禮의 나눔

의례문화는 가족집단의 사회적 관계를 신성시하고, 집단결속을 강화하고 가족질서의 각질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군분상속제 하에서 奉祀는 나름대로 원칙과 오랜 관행이 있었다. 분할 및 윤회봉사로 특정 제사를 자손들 간에 해마다 돌아가며 지내는 방법을 말한다. 아들, 딸, 손자 등 자손들이 그들 선조 제사 가운데 특정 제사를 맡아 제사의 준비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전담하는 것으로 특정인의 제사를 전담하면 평생 그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때 해당 묘위(墓位)에 대한 제사조 재산도 관리·운영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주(父主: 아버님)의 제사를 자녀들 순서대로 해마다 각자 돌아가며 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윤회봉사로 해남 윤씨가에서 1676년부터 1679년까지 4년간의 제사를 맡은 사람을 정하고 이를 기록해둔 자료에 의하면 3대에 걸쳐 봉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4년간 각 자녀들이 대체로 6~8회에 걸친 제사를 맡아 관장하게 된다. 종가라고 하여 제사가 많거나 딸이 제사에서 제외되거나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3~4년 단위로 이렇게 제사를 분장(分掌)하고 이를 기록하여 나누어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3. 여성노동을 통해본 경제극복

1) 생산활동의 활성화

양잠은 정부의 적극적인 勸蠶政策으로 15세기 중엽을 시작으로 16세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면주(綿紬)의 생산량도 크게 확대되었다.

직조업은 여성들의 생산노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세금으로 화폐 역할을 하는 국가적 기여의 측면에서도 여성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와 같은 재생산노동은 물론 무명 명주 삼베 모시 등 길쌈을 통해, 그리고 틈틈이 섞바느질로 점점 재산을 늘려 나갔던 것이다.

당시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목 중에는 가정경제를 해결하는 女功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쓰인 여성 행장류의 글에는 ‘女功에 능하셨다’는 표현이 거의 빼놓지 않고 들어가 있다. 이때의 女功이란 바느질, 음식 만들기 외에도 침선과 방적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양반층의 여성도 사화를 당하여 갑자기 가세가 기우는 경우에는 특히 女功에 힘써야 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베는 단지 옷감만이 아니라 세금의 역할로서 마치 화폐와도 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에 양반 여성들도 가정 경제가 어려울 때는 베를 열심히 짜야 했다. 왜냐하면 직조는 베를 짜서 식구들의 옷을 지어 입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 집안을 일으키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는 밑천이 되기 때문이다. 즉 조선시대나 오늘날이나 일상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여성의 일상적 노동력도 생산의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법으로 뽕나무를 심게 하여 누에치기를 백성들에게 권장했으며, 특히 여성들의 노고를 노래로 만들어 치하하기도 했다. 성종 8년과 24년 3월에 두 차례 대궐에서 왕비가 몸소 친잠례(누에치기 의식)를 거행하여 양잠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에서 농사를 장려하는 교서를 내릴 때마다 농민과 직조하는 여성들의 노고를 대비하여 치하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여성들의 생산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누에치기를 통해 생산되는 견사는 국가에 공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주로 시장을 통해 거래되었다.

이렇게 전통사회에서의 가족은 남녀의 역할에서 여성은 가내노동을 중심으로 역할이 분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계층에 따라 달리 행해졌다. 그러나 극히 일부 양반층의 여성은 제외하고 일반 가정의 여성들은 가내노동과 더불어 생산노동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예로 은진 송씨 집안이 부흥하게 된 것은 그 할머니가 자신이 짠 베를 가지고 전답을 산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이단하(李端夏 : 1625~1689)가 자신의 어머니인 청송 심씨(1645~1718)를 기리며 쓴 <선비정부인행장(先妣貞夫人行狀)>에서는 가난한 살림을 힘겹게 꾸려 나갔던 그녀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 가난한 시집살이에서 그녀는 방적과 농사짓기에 힘을 쏟았고 그 후 차츰 집안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다. 김만중의 어머니인 해평 윤씨(1617~1689) 역시 가난한 살림에 아들 둘을 키워내야 했는데, 그녀 역시 수놓기를 열심히 하여 살림에도 보태고 또 길쌈을 하여 아들들 공부시킬 책도 구입하였다고 한다.

18세기 중엽에서 말엽의 이덕무는 실학자답게 다만 절약을 설함에 그치지 않고 가계가 곤란할 때에는 본래의 직분인 방적과 양잠은 물론이고 닭과 오리를 치고 장과 초와 기름을 팔며... 등 부녀의 적극적인 경제적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錢穀 출입을 반드시 책에 기록하여 家長을 뵈어 흐르고 새는 것이 없도록 할 것을 이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는 술을 담아 팔기도 하였다. 송시열(宋時烈 : 1607~1689)의 <유인김씨묘지 명명서(孺人金氏 墓地銘竝書)>는 김수항(1629~1680)의 죽은 딸을 위한 글인데, 그 묘지명 중에 ‘한때 집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술을 빚어서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술 빚기는 삶바느질이나 길쌈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반가 여성들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행상을 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쇄미록』갑오년(1594) 3월 11일조에 “집사람이 떡을 쪘서 오늘 장에 내다 팔려고 했는데, 비로 인해서

장에 나가지 못했기에 아이들과 함께 먹었으니 닷 되의 쌀만 허비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 형편이 곤란할 경우에는 여성들이 체면을 가리지 않고 가정경제를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정조실록』을 보면, 정조 20년 11월 25일 기사에 “제주濟州 기생 만덕 萬德이 재물을 풀어 깔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렇게 실제 대다수의 여성들은 가사와 함께 생산자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지만은 않았다. 화폐와 같이 교환될 수 있는 布도 여성노동(길쌈)이었으며, 밭농사인 잡곡은 여성이 생산의 주요과정을 맡았으며, 판매에도 관여하여 가정경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治產과 관련된 활동은 가정경제의 운영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송시열은 婦德의 항목으로 田畠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예에서 조선조 七出三不去제도 중 三不去의 하나인 ‘先貧賤後富貴’의 내용을 입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조선 중·후기에는 화폐 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상업이 번창할 뿐 아니라 계층이동도 비교적 활발해지므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은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양반가 부인들의 직접적인 전답의 거래도 있었다. ‘양반가 부인 전답매매명문’에 따르면 양반가 부인들이 전답을 매도했던 사유는 가난, 멀어서 耕食하기 어려우므로 바꾸어 전답을 사기 위해, 빚, 稅納, 갑작스러운 袷을 치르거나 제수를 마련하기 위해, 쓸 곳이 있어서, 남편의 옥바라지 등으로 다양하였다. 그러나 당시 孫外與他禁止 관념에 의해 양반가에서 전답을 파는 것을 꺼려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양반가 부인이 전답을 매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득이한 생계형 가난으로 귀결된다.

또한 名門의 내용 중 남편, 아들의 棺材 및 祭需마련, 또는 後嗣 없이 죽은 가까운 친인척의 祭需를 마련하는 등 양반가 부인들이 갑자기 생긴 불상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된 기록에서 생활이 어려웠던 양반가 부인들도 전답을 팔아가면서 유교적 育祭禮 문화를 충실히 지켜나가며 가정경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갔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6-17세기 고문서중 兩班 田畠去來의 性別 건수를 보면 양반가 부인의 비율이 높지 않으며, 성리학의 남녀분별 관념에 따라 양반가 부인들은 개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한 가문의 구성원으로서 대외적으로 소속된 가문이나 지위를 밝힐 수 있는 ○○○의 처, ○○댁, 친족 춘수 등을 자신의 성씨 앞에 붙이는 방식으로 전답 매매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반가 부인이 전답을 放賣했던 사유는 크게 가난한 실림에 生計가 어려워져 파는 경우와 다른 전답을 買得하기 위해 팔아 적극적 농업경영을 했던 경우로 분류되는데 여성들이 주로 전담했던 家庭運營權과 상당수의 부인들이 전답거래를 했던 田畠賣買活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조선사회에서는 양반가 부인의 매매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후기에는 화폐 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상업이 번창할 뿐 아니라 계층이동도 비교적 활발해지면서 조선시대 여성들은 가사일 뿐 아니라 직조, 농사일, 삽바느질, 행상, 해녀업, 전답매매활동 등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더욱 고단하며 부지런한 적극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경제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실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혼맥을 통한 가산의 확장

1) 반가의 혼맥

사족이란 학문에 힘쓰는 것을 근본으로 여기며 물질적인 부(富)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말한다. 그러나 종족의 발전에 성공한 문중은 모두 학문적 성취 못지않게 경제적 기반이 탄탄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 직접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노비를 동원해 토지를 개간하고 농업생산에 힘쓰며 검소한 생활과 함께 하는 등 이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조선전기 의성김씨 청계파의 내력을 보면 조선조 중기에 이르기까지 고려조의 유습에 따라 자녀의 균분상속과 외손봉사제도가 행해지고 있었고, 따라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처가로부터 분급(分給) 혹은 외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중요했다. 재산의 내역은 토지와 노비가 주된 것으로, 노비를 사용해 농사를 짓고 새로운 토지를 입안을 통해 개척·개간하고 매입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 청계파는 만근, 예법, 진에 이르는 삼대에 걸쳐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는데, 만근은 임하의 유력인사 오계동의 사위가 되어 상당한 재산을 분급받고 천전에 터를 잡았다. 그의 아들 예법의 부인은 벽동군수를 지낸 신명창의 딸로서 살림을 잘해 종가의 재정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70여 칸짜리 집을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역시 상당한 재산을 시집으로 가지고 온 것을 알 수 있다. 진은 더욱 재산을 증식하는 데 힘쓴 것으로 보인다. 4대가 한 집에서 노비를 데리고 살았으니 그 규모가 짐작된다. 태종의 장인이었던 민제의 5대손이자 좌승자를 지낸 민세경의 사위가 되어 상당한 재산을 분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의 장남 극일도 처가로부터 허여 받은 재산은 경기, 충청, 황해 일대에 걸쳐 엄청나게 많았으며, 사족들에게 혼인은 사회적 명망과 관계의 망을 위한 문화적 자산을 확보 뿐 아니라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데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2) 양친교혼의 재산증식

단편적이지만 고려 중기의 양친교혼 현상은 조선 중기까지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1609년 울산 호적 분석에 의하면 솔거노는 93.9%, 외거노는 51%가 양녀와 혼인하고 있었다. 솔거노의 양친교혼이 철저하였음은 주인의 재산증식 의식이 노비의 결혼에 작용하였음을 뜻한다. 즉 조선 중기에는 양친교혼이 보편적인 양상이었던 것이다.

5. 상부상조 공동체문화의 활용

1) 사회 환원의 상부상조

『星湖僕設』에서는 “재물만 있고 德이 없으면 차라리 재물이 없는 것만 못한 것이다....”라 하여 재물과 절용에 앞서 義理와 德을 강조하였다.

양반의 체모를 유지하며, 동시에 네가 살아야 나도 사는 상생의 원리를 가문의 철학으로 이어온 대표적인 예로 경주 최 부잣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 또는 원칙이 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기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다섯째, 최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여섯째,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다. 당시 진사는 양반 신분으로 이 정도까지만

했을 때 품위를 유지하면서 정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 부잣집에는 과객을 접대하는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다. 항상 많은 과객으로 최 부잣집에서 쌀과 과매기를 과객에게 들려 주변의 노비 집으로 보내면, 과객들을 접대하는 대가로 최부잣집 주변에 사는 노비들은 소작료를 면제받았다고 한다.

사방 100리 안에 굽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대목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대변하고 있다. 즉 주변에서 굽어죽고 있는 상황인데 양반으로 나 혼자 만석이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는 대목은 실제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여자들의 절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릿고개 때에는 집안 식구들도 쌀밥을 먹지 못하게 했고, 수저도 은수저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백동 순가락의 태극무늬 부분에만 은을 박아 썼다고 한다.

이상 조상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상생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경주 최씨 가문의 후손들은 주변도 살고, 자신들도 행복하고 존경받는 가문으로 이어가고 있다.

2) 동계·동약을 통한 상부상조

계는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이룬 협동조직 또는 경제조직으로 돈이나 물질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는 것으로 고대부터 있었으나 18세기 이후 즉 조선 후기 특히 성행했다.

항약(鄉約)이 16세기 이후 보급 실시된 군현 단위의 조직과 규약이라면, 동계·동약은 양반들이 거주하던 마을을 단위로 한 생활문화공동체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양반 상호간의 경제적 상부상조를 통해 공동체적 유대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 소유의 노비와 촌락의 하층민들을 지배하고자 한 것이었다.

안동에서는 16세기 중반 경부터 동계·동약 등이 실시되어 설립 목적은 마을 내의 친척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것으로 혼인과 상사에 부조하고, 환난에 서로 도우며, 봄 가을로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동계·동약에서 행하던 길흉사에 대한 부조 내용을 보면 다음<표 1>과 같다.

<표 1>의 부조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길사 보다는 흉사의 부조가 더욱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길사에는 쌀이나 꿩·닭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흉사에는 양도 많아지지만 상장(喪葬)에 필요한 새끼, 초석, 가마니 등 물품의 제공과 장지의 조성, 회꼽기 등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흉사에 이같이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었던 것은 유교적인 상장례(喪葬禮)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력과

<표 1> <동계·동약>에서의 길흉사 부조 내용

년 도	구 분	부 조 내 용
1554	길 사	쌀 5되, 꿩, 닭 중 1마리씩 거두어 지급
	흉 사	쌀·콩 각 5되, 종이[常紙] 1권 수합, 장정(壯丁) 각 2명 2일 부역, 가마니 3장, 새끼 40발, 이영 20발씩 수합
1615 (更定)	길 사	쌀 10말 지급, 꿩·닭 중 1마리 거두어 지급
	흉 사	쌀 10말, 콩 5말, 종이값 10말, 새끼 40발, 초석(草席) 5장, 포 3필, 가마니 2장, 새끼 20발, 이영 10발 역노(役奴) : 각 장노(壯奴) 2명 1일 부역, 회꼽기[燔灰] : 동원(洞員) 각기 사람과 소를 내어 운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양반들은 이와 같은 상호부조를 통해 특히 의례문제를 해결하고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향약의 조항에도 ‘상부상조’나 ‘환난상휼’같은 조목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는 이웃을 돕자는 정신을 포함했다. 향약 실시에 앞장섰던 이이는 사창계(社倉契)를 만들어 계원의 경제적 편리를 도모했다. 곧 마을 단위로 돈이나 쌀, 피륙 등 물품을 내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도와주려는 취지였으며, 또한 적립하여 대여하는 등으로 이식을 불려 어려운 때를 대비했다.

즉 혼인이나 초상 같은 큰 일이 있을 때 갚돈으로 부조를 하기도 하고, 사업자금이 넉넉하지 못할 적에 사업자금으로 쓰기도 하며, 농가에서는 소 같은 비싼 것을 사기도 하는 등에 기여함으로써 친목도 모 뿐 아니라 가계경제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

成倪의 <용재총회>에서는 향도 연회를 “대체로 이웃의 천민들끼리 모여 회합을 갖는데 적으면 7-9인 이요, 많으면 혹 100여인이 되며 매월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고 상을 당한 자가 있으면 같은 향도끼리 상복을 마련하거나 관을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하며, 혹은 상여줄을 잡아주거나 무덤을 만들어 주니 이는 참으로 좋은 풍속이다”라고 묘사하였다.

한편 자연재해 등의 기근이 있을 때 전통사회는 어떻게 대응했나?

기근은 조선시대 초부터 대략 50년을 주기로 하여 왜란과 호란 이후로 17세기 말에 정점을 이루다가 18세기 후반까지 이어졌으나, 점차 감소하다가 19세기에 들어와 격감한다. 기근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국가의 장기적 곡물비축제도의 효과가 특별히 주목되지만 촌락 내의 생활문화로 민간신용(私債)과 契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지역차원에서는 양반지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契조직이 발전하여 개별 소농이 생산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공급하는 한편, 계기금의 운영을 통해 소농경영의 불안정을 완화시키고 생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기근의 발생과 그에 대한 가정의 대응은 국가 정책이나 촌락제도, 가족제도, 생산관계, 재산권 등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제도와 밀접하게 관계되므로 식량의 생산과 소비 외에도 국가와 향촌의 생활문화의 측면에서 총체적 이해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1) 기복신앙에서 본 경제극복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는 종교 의식과 관련된 행동들도 포함되며,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물질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상 숭배 시 물질적인 공양을 함으로써 물질 획득의 신념이 있을 수 있고, 의식행동을 통해 화를 피하려는 액땜의 소비 신념이 있을 수 있다. 재물이 소중하기는 해도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획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종류의 액땜 소비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물질 가치관은 종교 의식의 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 문화에서 신앙이라는 종교 행동에는 물질적 신념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물질을 바침으로써 종교적 절대자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획득 신념과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罪를 피할 수 있다는 액땜 신념을 의미한다. 만약 물질추구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도 앞으로 罪를 당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현재 물질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호 획득하기 위하여 물질을 종교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우리 문화에서 획득 신념과 액땜 신념을 포함한 기복신앙은 경제극복을 위한 적극적 방어적 방안의 하나로 지속될 것이다.

IV. 맷음말

본 연구는 조선조를 중심으로 선조들의 생활문화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의 선조들은 ‘분수 지키기와 상생’을 기본원리로 하여 일상생활과 의례, 지역사회문화에서 다양한 경제극복 방안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절용과 김박, 사치의 금지라는 소극적인 방법 외에도 여성들의 적극적 생산활동과 조상제례 의무에서의 나눔 활동, 혼맥과 신분을 뛰어 넘는 가세 확장 방법, 계와 두레라는 공동체적 생활문화 등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다시 義理와 德을 기초로 하는 절제와 나눔의 美德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사회의 부정적 기능을 설명할 때 체면의식과 혼례 혀식적 관습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혼례와 제례상의 문제원인을 전통사회의 혼례 혀식적 관습으로 이름하여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전통 가정의례의 본래 풍습은 각 절차와 행위에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신분사회인 만큼 분수에 맞는 범위에서 의례에 용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로써 혼례절차의 의미, 신분에 따라 제례의 범위 및 제수내용에 차등을 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오늘날 전통사회의 관습은 혼례 혀식적 체면의식 등의 부정적 잠재기능으로만 지적되고 있지만, 의례가 갖는 내면적 깊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현대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재해석이 요구된다. 또한 조선조는 신분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절용과 사치의 금지를 기본으로 분수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점, 선조들의 경제극복을 위한 절용의 지혜와 가진 자의 공동체의식에 따른 솔선수범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와 실천을 귀감으로 오늘날에도 올바른 경제생활문화에 접목한다면 경제적 위기 극복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신경숙, 전통사회의 여성생활, 대광문화사, 1986
한국역사 연구회, 조선시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청년사, 1996
이배용, 한국역사속의 여성들, 어진이, 2005
문옥표 외,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백산서당, 2004
제1차 가족정책포럼, 경제위기와 가정: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미의 모임, 2009
조선고문서학회,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역사비평사, 2006
이배용 외,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1999
조용현, 명문가이야기, 푸른역사, 2005
김경리 외, 국제문화재단편, 한국의 규방문화, 한국문화선집시리즈 제6권, 박이정, 2005
안동시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안동양반의 생활문화, 영남사, 2000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조선시대 생활사, 민속학술 자료총서, 역사비평사, 1997
예·도12, 우리마당 터, 2005

- 이이화, 역사풍속기행, 역사비평사, 2008
- 김연신, 18세기 조선사회 외래 사치품 紋緞의 소비 확대와 금지정책,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재호, 한국전통사회의 기근과 그 대응, 1999
- 이순구, 조선초기 여성의 생산노동, 국사관논총 제49집, 국사편찬위원회, 1993
- 정형지, 김경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4, 보고사, 2006
- 성영신외, 한국인의 경제 가치관에 관한 연구: 조선중·후기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995, Vol. 8 No. 1
- 성영신, 한국인의 가치관과 과소비행동,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건전소비전략, 한국가정생활진흥회 제3회 심포지움, 1997
- 백경미, 도시주부의 과시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제3차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소비자학회, 1995
- 柳重臨, 산림경제, 민족문화추진회, 1982
- 李萬運, 증보 문헌비고, 제86권, 예고33,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1981
- 빙허각 이씨 원저, 규합총서, 寶珍齋, 1975
- 경국대전
- 조선왕조실록
- 이코노미스트(2009. 4. 28. 984호)

조선시대 생활문화에서 본 경제극복 방안

전 미 경(동국대학교 교수)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규범서 등에 나타난 조선시대의 생활문화를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조선조 유교문화권에서는 경제난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고찰”하는데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경제생활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일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반가라고 하면 흔히 의례적 행위에서의 형식이 강조될 것이라 여겼는데,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난 과도한 의례행위에 대한 경계, 분수 지키기 등이 중요한 생활규범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글이 아직 완성된 글이 아니기에, 연구자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연구자께서는 머리말에서 전통은 ‘인습’과 구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단순한 미화의 대상이 되어서도”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통’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와 오늘날이 다른 사회·경제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삶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좀 더 상세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어떠한 행위를 통해 극복하였는가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서 지금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가치들을 찾겠다는 것인데 논의가 전자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산업사회·시민사회인 오늘날, 농경사회·계급사회였던 조선조의 경제생활에서 미덕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경제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규범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미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통해 본 경제 극복”에서 절용과 체통, 사치금지, 은화유출방지, 금주, 부채사치금지, 가채금지 등은 모두 ‘근검절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조에 사치의 금지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생활이 많았고, 사치의 금지가 강제력이 약했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치금지에 대한 위로부터의 규율이 상당히 강조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왜 그것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금지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 ‘경주 최부장집’의 가훈이나 동계·동약·두레의 공동체 문화는 노동력을 공유해야 하는 농경사회, 비교적 근거리에 친인척이 모여 사는 마을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자연발생적인 규범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것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규범이 오늘날 어떤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에도 上下의 분수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문구에서 분수 지키기의 덕목은 조선조 계급사회에 기반을 둔 덕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급사회가 아닌 오늘날 ‘분수’는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수’는 실제로 차이와 차별을 합리화하는 용어로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수 지키기’ 그 자체의 덕목보다는 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논의로 금주령 자체보다는 ‘금주령’을 내린 이유나, ‘금주령’을 통해 구현하고 싶은 보다 상위의 덕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금주의 이유는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비이성적 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비난받지만, 과거의 금주는 흉년으로 절대량의 쌀이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금주’라기보다는 ‘금주’를 둘러싼 이유, 목적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자께서 정리하였듯이 조선시대 경제생활에서 강조되는 것은 ‘분수 지키기’와 ‘상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두 덕목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500년의 조선시대는 이 시기를 ‘조선’이라는 한 범주로 묶어 경제생활의 미덕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부에 다양한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의례문화의 경우 ‘윤번제’를 통한 상·제례는 조선 전기의 제례문화이고 이후에는 ‘경제적 차원’이 아닌 종법의 강화로 윤회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계파의 균분상속, 외손봉사도 17세기 이전의 논의이고 조선 말기에 이르면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요소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왜 사라지게 되었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여성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겪약 등의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베를 짜고, 양잠업을 하면서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지금 경청하는 이유는 노동이라는 행위에 남녀구분이 없었고, 양반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겹약 등의 소극적인 방법 뿐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생활문화에서 본 경제극복 방안’이라는 제목보다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경제 생활문화와 현대적 의의’로 제목을 수정한다면 연구 목적의 의도가 더욱 분명해 질 것입니다. 또 경제극복방안을 ‘일상생활을 통해 본 경제극복’, ‘의례문화를 통해 본 경제극복’, ‘여성노동을 통해 본 경제극복’, ‘혼맥을 통한 가산의 확장’, ‘상부상조 공동체문화의 활용’의 5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였는데, 이 범주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인/마을(공동체)/제도적 차원(신분별, 성별)으로 설명하면 더 체계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